

---

---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변경 실시 협약

---

---

2021. 4.

국 토 교 통 부  
스마트레일 주식회사

# 변경실시협약

대한민국 정부(국토교통부)와 스마트레일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는 2013년 1월 30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사업에 대한 일부 운영의 범위가 변경되어 운영비 등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협약의 일부를 변경한다.

## 제1조 정의

- ① 이 변경실시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이 변경실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실시협약에서 정의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 ② 실시협약 제3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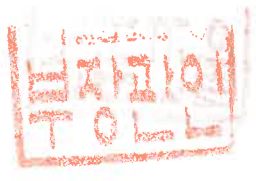
당 초	변 경
<p>제3조 (정의)</p> <p>3. “건설기간”이라 함은 이 협약체결 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p> <p>6. “공사감리자”라 함은 주무관청에 의해 지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에 정해진 책임감리를 수행하기 위해 동법 제28조 (감리전문회사)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해 지정된 책임관리자(또는 동법 제22조의2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p>	<p>제3조 (정의)</p> <p>3. “건설기간”이라 함은 <u>최초 실시협약 체결일</u>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p> <p>6. “공사감리자”라 함은 <u>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정해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동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규정된 감리전문회사)</u>를 말하며, 그 승계인 또는 대체인</p>

<p>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규정된 감리전문회사)를 말하며, 그 승계인 또는 대체인을 포함한다.</p>	<p>을 포함한다.</p>
<p>13.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p>	<p>(신설) “국가계약법”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p> <p>13.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하며, <u>그 개정의</u> 경우를 포함한다.</p>
<p>14.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말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p>	<p>14.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말하며, <u>그 개정의</u> 경우를 포함한다.</p>
<p>24. “민간투자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10220호 <u>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u>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p>	<p>24. “민간투자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15460호 <u>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u>을 의미하며, <u>그 개정의</u> 경우를 포함한다.</p>
<p>25. “민간투자법 시행령”이라 함은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2626호 <u>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u>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p>	<p>25. “민간투자법 시행령”이라 함은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0221호 <u>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u>을 의미하며, <u>그 개정의</u> 경우를 포함한다.</p>
<p>26.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하여 공고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p>	<p>26.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하여 공고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하며, <u>그 변경의</u> 경우를 포함한다.</p>

<p>27. “본 사업” 이라 함은 본 협약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특정된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p>	<p>27. “본 사업” 이라 함은 본 협약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특정된 본 사업시설의 <u>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u>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p>
<p>28. “본 사업부지” 라 함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되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p>	<p>28. “본 사업부지” 라 함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되는 본 사업시설의 <u>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u>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p>
<p>39. “사업기간” 이라 함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함)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으로 구분된다.</p>	<p>39. “사업기간” 이라 함은 <u>최초 실시협약</u>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함)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으로 구분된다.</p>
<p>40. “사업년도” 라 함은 <u>부정본인</u>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사업개시년도의 경우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종료년도의 경우에는 1월 1일로부터 실제로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p>	<p>40. “사업년도” 라 함은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사업개시년도의 경우에는 <u>최초 실시협약</u> 협약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종료년도의 경우에는 1월 1일로부터 실제로 <u>유지관리 및 운영</u>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p>
<p>41. “설계감리자” 라 함은 건설공사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가 관련 법령과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건설 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 등에 따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감리하는 자를 말한다.</p>	<p>41. “설계감리자” 라 함은 건설공사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가 관련 법령과 <u>건설기술진흥법</u> 제44조 제1항 각 호의 건설 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 등에 따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감리하는 자를 말한다.</p>

42. “성과평가위원회”라 함은 본 사업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목적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 제54조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50. “운영비”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대가로서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비, 부대비 및 제경비를 말한다.



51. “유지관리”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본 협약 제47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업시설이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도로 관리하는 것에 한함),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

42. “성과평가위원회”라 함은 본 사업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평가를 목적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 제54조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50. “운영비”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대가로서 인건비, 유지관리비(전력비 포함), 운영설비대체비, 보험료, 부대비 및 제경비를 말한다.

(신설) “전력비”라 함은 정거장 등의 전기료와 운전운영에 필요한 동력비 일체를 말한다.

(신설) “역무업무”라 함은 역에 인력을 투입하여 고객응대, 운임징수, 역사내 각 시설의 모니터링, 문제발생 시 초기대응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서비스를 말한다.

51. “유지관리”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 [정거장 청소, 운영설비 대체 포함(역 운영 설비 대체도 포함된다.)]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본 협약 제47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업시설이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

<p>을 말한다.</p> <p>64. “철도운영자”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철도운영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p>	<p>도록 하는 정도로 관리하는 것에 한함),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p> <p>(신설) “유지관리 및 운영”이라 함은 본조 51호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인력과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p> <p>64. “철도운영자”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정한 철도운영기관을 말한다.</p>
--	---

제2조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사업시행자 과업 변경

① 실시협약 제1조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p>제1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p> <p>③ 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추진단계별로 당사자간에 본 협약에서 정한 계약 과 업무로 이루어진다.</p> <table data-bbox="197 1657 817 1830"> <tr> <td>사업시행자</td> <td>주무관청</td> </tr> <tr> <td>7. 유지관리 및 운영</td> <td>시설의 사용</td> </tr> </table>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7. 유지관리 및 운영	시설의 사용	<p>제1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p> <p>③ 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추진단계별로 당사자간에 본 협약에서 정한 계약 과 업무로 이루어진다.</p> <table data-bbox="817 1657 1434 1830"> <tr> <td>사업시행자</td> <td>주무관청</td> </tr> <tr> <td>7.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td> <td>시설의 사용 및 역무업무</td> </tr> </table>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7.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시설의 사용 및 역무업무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7. 유지관리 및 운영	시설의 사용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7.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시설의 사용 및 역무업무								

② 실시협약 제2조 3항 및 4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p>제2조 (사업의 추진방식)</p> <p>③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지급되는 임대료와 부속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순이익으로 회수되며, 본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는 운영비로 충당된다.</p> <p>④ 본 시설의 최종이용자의 이용대가는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본 시설의 이용에 따른 수요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주무관청에 있다.</p>	<p>제2조 (사업의 추진방식)</p> <p>③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지급되는 임대료와 부속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순이익으로 회수되며, 본 시설의 <u>유지관리 및 운영</u>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는 운영비로 충당된다.</p> <p>④ 본 시설의 최종이용자의 이용대가는 <u>주무관청이 지정한 철도운영자에게</u> 귀속되며, 본 시설의 이용에 따른 수요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주무관청에 있다.</p>

③ 실시협약 제32조 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p>제32조 (민원처리)</p> <p>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2. 시공 및 운영민원 : 소음, 악취, 진동,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본 사업의 설계,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p>	<p>제32조 (민원처리)</p> <p>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2. 시공 및 운영민원 : 소음, 악취, 진동,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본 사업의 설계, <u>공사,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으로</u>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p>

④ 실시협약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p>제47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p> <p>① 사업시행자는 부록1(성과요구수준서) 및 본 협약 제46조의 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의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주무관청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해 업무담당관을 지정하여 이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p> <p>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시설물 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 관련법령 및 실시협약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p>	<p>제47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p> <p>① 사업시행자는 부록1(성과요구수준서) 및 본 협약 제46조의 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의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본 사업시설을 <u>유지관리 및 운영</u>하여야 한다.</p> <p>② 주무관청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u>정상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u> 등을 위해 업무담당관을 지정하여 이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p> <p>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u>시설물 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u> 등 관련 법령 및 실시협약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p>

⑤ 실시협약 제50조 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p>제50조 (경미한 사업)</p> <p>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p>	<p>제50조 (경미한 사업)</p> <p>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u>철도운영자의 역운영</u>에 지</p>



에서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 체결 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 체결 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

⑥ 실시협약 별표1(본 사업의 개요 및 범위)의 내용을 이 변경실시협약에 첨부된 별표1(본 사업의 개요 및 범위)의 내용으로 변경한다.

### 제3조 운영비의 변경

① 실시협약 제42조 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제42조 (운영비의 결정 등)  ① 제61조에 따라 산정하여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운영비의 표준 비용(2008년 7월 1일 기준 불변 운영비)은 금 268,624백만원이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표10(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줄)와 같다.	제42조 (운영비의 결정 등)  ① 제61조에 따라 산정하여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운영비의 표준 비용(2008년 7월 1일 기준 불변 운영비)은 금 256,523백만원이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표10(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줄)와 같다.

② 실시협약 별표9(임대료 산정방법 및 지급스케줄)의 ‘정부지급금 지급스케줄’은 이 변경실시협약에 첨부된 별표9(임대료 산정방법 및 지급스케줄)의 ‘정부지급금 지급스케줄’의 내용으로 변경한다.

③ 실시협약 별표10(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줄)의 내용을 이 변경실시협약에 첨부된 별표10(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줄)의 내용으로 변경한다.

제4조 개정된 법규명 적용

① 실시협약 제13조 7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p>제13조 (총민간사업비의 변경)</p> <p>⑦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법, 국가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산출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 민간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p>	<p>제13조 (총민간사업비의 변경)</p> <p>⑦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법, 국가계약법, <u>건설기술진흥법</u>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산출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 민간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p>

② 실시협약 제33조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p>제33조 (환경 및 안전관리)</p> <p>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 시공을 위한 안전관리 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3조 (환경 및 안전관리)</p> <p>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 시공을 위한 안전관리 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u>건설기술진흥법</u> 및 <u>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u> 등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p>

③ 실시협약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 초	변 경
<p>제34조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p> <p>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실시설계와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른 설계감리를 시행하고, 주무관청(주무관청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감리를 감독한다.</p> <p>② 주무관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격업체인 설계감리자 및 공사감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선정한 설계감리자 및 공사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은 공동으로 공사감리자와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때 계약금액은 주무관청에서 선정한 감리자 선정시의 최종낙찰금액으로 한다.</p> <p>③ 사업시행자는 설계감리자 및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본 사업시설 설계 및 공사에 대하여 본 협약의 부록1(성과요구 수준서)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감리업무 및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설계감리자 및 책임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을 감독한다.</p> <p>④ 설계감리자 및 공사감리자는 설계감리업무 및 책임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p>	<p>제34조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p> <p>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실시설계와 <u>건설기술진흥법</u> 등에 따른 설계감리를 시행하고, 주무관청(주무관청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감리를 감독한다.</p> <p>② 주무관청은 <u>건설기술진흥법</u>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격업체인 설계감리자 및 공사감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선정한 설계감리자 및 공사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은 공동으로 공사감리자와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때 계약금액은 주무관청에서 선정한 감리자 선정시의 최종낙찰금액으로 한다.</p> <p>③ 사업시행자는 설계감리자 및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본 사업시설 설계 및 공사에 대하여 본 협약의 부록1(성과요구 수준서) 및 <u>건설기술진흥법</u>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감리업무 및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설계감리자 및 책임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을 감독한다.</p> <p>④ 설계감리자 및 공사감리자는 설계감리업무 및 책임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p>

<p>에 감리업무의 실시체계,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포함한 제반 감리업무의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이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업무현황을 <u>건설기술관리법령</u>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설계감리자는 본 사업시설 설계에 대하여 본 협약의 부록1 (성과요구수준서) 및 <u>건설기술관리법</u>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설계의 시행 전반에 대하여 감리하며,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설계용역에 대한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도 또한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에 감리업무의 실시체계,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포함한 제반 감리업무의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이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업무현황을 <u>건설기술진흥법령</u>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설계감리자는 본 사업시설 설계에 대하여 본 협약의 부록1 (성과요구수준서) 및 <u>건설기술진흥법</u>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설계의 시행 전반에 대하여 감리하며,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설계용역에 대한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도 또한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	--

### 제5조 실시협약의 효력 변경

실시협약의 내용은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변경 실시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대로 변경된다. 다만,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 현재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실시협약에 따라 발생한 본 협약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6조 변경실시협약의 효력발생

이 변경실시협약은 부전~마산 구간의 운영체계 개편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21년 4월 30일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민  
직무  
윤성



스마트레일 주식회사

대표이사석 중



# 변경실시협약



## 【별표 1】



### 본 사업의 개요 및 범위

본 사업 및 사업시설의 범위는 사업시행자가 2010년 5월 31일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합의된 변경사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다.

#### 1. 본 사업의 범위

사업시행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설계와 시공, 일부 범위에 대한 유지관리(관리운영권 20년) 책임을 진다.

#### 2. 본 사업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

구분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무관청의 업무를 제외한 관련업무 전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관계</li> <li>· 기존역(부전역, 사상역, 장유역) 및 신설역[(가칭) 김해공항, 가락[C역] 역무업무</li> <li>· 운임징수 및 정산</li> <li>· 열차운영(운전승무 및 운전취급)</li> <li>· 차량구매 및 차량검수·정비</li> </ul>
노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업무 전체</li> </ul>	
건물(기계설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업무 전체</li> </ul>	
궤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업무 전체</li> </ul>	
변전·전차선·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업무 전체</li> </ul>	
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업무 전체</li> </ul>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업무 전체</li> </ul>	
지하터널기계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업무 전체</li> </ul>	
부대(부속)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업무 전체</li> </ul>	

※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진례~마산 구간의 역무자동화설비 및 행선안내 설비의 유지관리는 주무관청이 시행함

【별표 9】

임대료 산정방법 및 정부지급금 지급스케줄

2. 정부지급금 지급스케줄

(단위 : 백만원, VAT별도)

연도	분기	임대료 (A)	부속사업 순이익(B)	운영비용 (C)	지급액 (A-B+C)
2017	1	28,994	113	4,123	33,004
	2	28,994	114	4,153	33,034
	3	28,994	114	4,183	33,063
	4	28,994	115	4,215	33,094
2018	1	28,994	116	4,246	33,125
	2	28,994	117	4,277	33,155
	3	28,994	118	4,309	33,186
	4	28,994	119	4,341	33,217
2019	1	28,994	120	4,374	33,248
	2	28,994	120	4,406	33,280
	3	28,994	121	4,438	33,311
	4	28,994	122	4,471	33,344
2020	1	28,994	123	4,505	33,376
	2	28,994	124	4,538	33,408
	3	28,994	125	4,572	33,441
	4	28,994	126	4,606	33,474
2021	1	28,994	127	4,640	33,508
	2	28,994	128	4,674	33,541
	3	28,994	129	4,709	33,574
	4	28,994	130	4,744	33,608
2022	1	28,994	131	4,779	33,643
	2	28,994	132	4,814	33,677
	3	28,994	133	4,850	33,712
	4	28,994	134	4,886	33,747

※ 주1) 임대료는 본 협약에서 확정된 기준일의 사업수익률 5.592%를 적용하여 산정함.



(단위 : 백만원, VAT별도)

연도	분기	임대료 (A)	부속사업 순이익(B)	운영비용 (C)	지급액 (A-B+C)
2023	1	28,994	135	4,923	33,782
	2	28,994	136	4,959	33,817
	3	28,994	137	4,995	33,853
	4	28,994	138	5,033	33,889
2024	1	28,994	139	5,070	33,926
	2	28,994	140	5,108	33,962
	3	28,994	141	5,145	33,999
	4	28,994	142	5,184	34,036
2025	1	28,994	143	5,222	34,074
	2	28,994	144	5,261	34,111
	3	28,994	145	5,299	34,149
	4	28,994	146	5,339	34,188
2026	1	28,994	147	5,379	34,226
	2	28,994	148	5,418	34,265
	3	28,994	149	5,458	34,304
	4	28,994	150	5,499	34,343
2027	1	28,994	152	5,540	34,383
	2	28,994	153	5,581	34,423
	3	28,994	154	5,622	34,463
	4	28,994	155	5,664	34,504
2028	1	28,994	156	5,707	34,545
	2	28,994	157	5,749	34,586
	3	28,994	158	5,791	34,627
	4	28,994	160	5,834	34,669
2029	1	28,994	161	5,878	37,711
	2	28,994	162	5,921	34,753
	3	28,994	163	5,965	34,796
	4	28,994	164	6,009	34,839

(단위 : 백만원, VAT별도)

연도	분기	임대료 (A)	부속사업 순이익(B)	운영비용 (C)	지급액 (A-B+C)
2030	1	28,994	166	6,054	34,883
	2	28,994	167	6,098	34,926
	3	28,994	168	6,144	34,970
	4	28,994	169	6,190	35,015
2031	1	28,994	171	6,236	35,060
	2	28,994	172	6,281	35,104
	3	28,994	173	6,328	35,149
	4	28,994	174	6,375	35,195
2032	1	28,994	176	6,423	35,242
	2	28,994	177	6,470	35,288
	3	28,994	178	6,518	35,334
	4	28,994	180	6,567	35,381
2033	1	28,994	181	6,616	35,429
	2	28,994	182	6,664	35,476
	3	28,994	184	6,713	35,524
	4	28,994	185	6,763	35,573
2034	1	28,994	186	6,814	35,622
	2	28,994	188	6,864	35,671
	3	28,994	189	6,915	35,720
	4	28,994	191	6,966	35,770
2035	1	28,994	192	7,018	35,821
	2	28,994	193	7,070	35,871
	3	28,994	195	7,122	35,922
	4	28,994	196	7,175	35,974
2036	1	28,994	198	7,229	36,026
	2	28,994	199	7,282	36,078
	3	28,994	201	7,336	36,130
	4	28,994	202	7,391	36,183
계		2,319,553	12,253	448,028	2,755,328

【별표 10】

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줄

1. 운영비의 구성

(단위 : 백만원, VAT별도)

구 분	운영기간(20년) 중 예산	비 고
1. 인 건 비	65,238	
2. 제 경 비	25,399	
3. 유 지 관 리 비	134,160	
건 물	3,038	
노 반	24,570	
케 도	18,911	
전 차 선 · 전 력	12,611	
신 호	11,715	
통 신 · 역 무 자 동 화	24,776	
기 계 설 비	14,319	
수 도 요 금	1,683	
전 력 비	22,536	
4. 보 험 료	29,325	
완 성 토 목 공 사 물 보 험	23,856	
기 업 휴 지 보 험	1,063	
영 업 배 상 책 임 보 험	4,000	
사 용 자 배 상 책 임 보 험	406	
5. 대 체 비	2,401	
운 영 설 비 대 체 비	2,062	
집 기 비 품 대 체 비	338	
합 계	256,523	

- ※ 1) 운영비는 불변가격 (가격산정기준일 : 2008. 07. 01.) 기준임
- 2) 연계선구의 신설 등에 따른 정부의 열차운행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대체시 설비(케도대체비 포함)는 향후 발생 시 추가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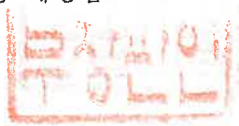
## 2. 운영비의 지급스케줄

(단위 : 백만원, VAT별도)

연도	분기	불변금액	정상금액	연도	분기	불변금액	정상금액
2017	1	3,207	4,123	2027	1	3,207	5,540
	2	3,207	4,153		2	3,207	5,581
	3	3,207	4,183		3	3,207	5,622
	4	3,207	4,215		4	3,207	5,664
2018	1	3,207	4,246	2028	1	3,207	5,707
	2	3,207	4,277		2	3,207	5,749
	3	3,207	4,309		3	3,207	5,791
	4	3,207	4,341		4	3,207	5,834
2019	1	3,207	4,374	2029	1	3,207	5,878
	2	3,207	4,406		2	3,207	5,921
	3	3,207	4,438		3	3,207	5,965
	4	3,207	4,471		4	3,207	6,009
2020	1	3,207	4,505	2030	1	3,207	34,883
	2	3,207	4,538		2	3,207	34,926
	3	3,207	4,572		3	3,207	34,970
	4	3,207	4,606		4	3,207	35,015
2021	1	3,207	4,640	2031	1	3,207	35,060
	2	3,207	4,674		2	3,207	35,104
	3	3,207	4,709		3	3,207	35,149
	4	3,207	4,744		4	3,207	35,195
2022	1	3,207	4,779	2032	1	3,207	35,242
	2	3,207	4,814		2	3,207	35,288
	3	3,207	4,850		3	3,207	6,518
	4	3,207	4,886		4	3,207	6,567
2023	1	3,207	4,923	2033	1	3,207	6,616
	2	3,207	4,959		2	3,207	6,664
	3	3,207	4,995		3	3,207	6,713
	4	3,207	5,033		4	3,207	6,763



2024	1	3,207	5,070	2034	1	3,207	6,814
	2	3,207	5,108		2	3,207	6,864
	3	3,207	5,145		3	3,207	6,915
	4	3,207	5,184		4	3,207	6,966
2025	1	3,207	5,222	2035	1	3,207	7,018
	2	3,207	5,261		2	3,207	7,070
	3	3,207	5,299		3	3,207	7,122
	4	3,207	5,339		4	3,207	7,175
2026	1	3,207	5,379	2036	1	3,207	7,229
	2	3,207	5,418		2	3,207	7,282
	3	3,207	5,458		3	3,207	7,336
	4	3,207	5,499		4	3,207	7,391
				계		256,523	448,028

※운영비 경상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3%를 반영한 기준으로 향후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변경 예정임



【별표 11】

관리운영권의 인계

시 설 물 인 계	비 고
○ 본 협약에서 정한 시설물의 인계 : 1식	
○ 설계 및 시공부문 성과요구수준서에 정한 내용 : 1식	
○ <u>유지관리 및 운영부문 성과요구수준서에 정한 내용</u> : 1식	
○ 유지관리지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li> <li>- 시설물 유지관리지침</li> <li>- 특기사항 등</li> </ul>  	
○ 기타 상호 협의된 내용	

# 변경 실시 협약 부 록



성과요구수준서  
변경사항

현 행	변 경	사유
I. 설계 및 시공부문 성과요구수준서	I. 설계 및 시공부문 성과요구수준서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p>1.1 목적</p> <p>본 설계 및 시공부문 성과요구수준서는 국토해양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설계 및 시공에 관련된 제반 요구수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1.1 목적</p> <p>본 설계 및 시공부문 성과요구수준서는 국토교통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설계 및 시공에 관련된 제반 요구수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2. 사업설명서	2. 사업설명서	
2.1 사업개요	2.1 사업개요	
<p>(2) 위치</p> <p>④ 본선 시종점 위치 및 좌표</p> <p>주1) Z값의 수준기면은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정한 표고 0m를 100.85m로 한다.</p> <p>주2) Z값의 수준기면은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정한 표고 0m를 101.51m로 한다.</p>	<p>(2) 위치</p> <p>④ 본선 시종점 위치 및 좌표</p> <p>주1) Z값의 수준기면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정한 표고 0m를 100.85m로 한다.</p> <p>주2) Z값의 수준기면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정한 표고 0m를 101.51m로 한다.</p>	
3. 설계	3. 설계	
3.1 일반사항	3.1 일반사항	
<p>3.1.2 관계 법규 등 제반기준 준수</p> <p>(2)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가장 최근(고시일 기준)의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하여야 하며, 고시 이후 본 사업관련 법령, 지침, 규칙, 시방서 등 재·개정 사항 발생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p> <p>① 관련법규</p> <p>가) 철도관계법령 및 관련 규칙, 지침 (국토해양부)</p> <p>나) 철도건설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해양부)</p> <p>다) 건설산업기본법·동시행령·시행규칙 (국토해양부)</p>	<p>3.1.2 관계 법규 등 제반기준 준수</p> <p>(2)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가장 최근(고시일 기준)의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하여야 하며, 고시 이후 본 사업관련 법령, 지침, 규칙, 시방서 등 재·개정 사항 발생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p> <p>(가) 관련법규</p> <p>가) 철도관계법령 및 관련 규칙, 지침 (국토교통부)</p> <p>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p> <p>다) 건설산업기본법·동시행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p>	



현행	변경	사유
<p>라) 건설기술관리법·동시행령·시행규칙 (국토해양부)</p> <p>마) 철도안전법·동시행령·시행규칙 (국토해양부) 및 도시철도법·동시행령 (국토해양부)</p> <p>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동시행령·시행규칙 (국토해양부)</p> <p>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p> <p>아)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p> <p>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 (보건복지가족부)</p> <p>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해양부)</p> <p>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환경부)</p> <p>하)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국토해양부)</p> <p>거)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국토해양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p> <p>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방재청)</p> <p>더) 철도사업법·동시행령·시행규칙 (국토해양부)</p> <p>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p> <p>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법시행령·시행규칙(지식경제부)</p> <p>서) 소방시설공사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소방방재청)</p> <p>저) 지하수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해양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p> <p>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지식경제부)</p> <p>② 관련시방서 및 기준</p> <p>가) 공통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건설규칙 (국토해양부)</li> <li>-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국토해양부)</li> </ul>	<p>라) <u>건설기술진흥법·동시행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u></p> <p>마) <u>철도안전법·동시행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u> 및 <u>도시철도법·동시행령 (국토교통부)</u></p> <p>바) <u>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동시행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u></p> <p>사)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u></p> <p>아) <u>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u></p> <p>카) <u>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 (보건복지부)</u></p> <p>타) <u>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u></p> <p>파) <u>실내공기질 관리법(환경부)</u></p> <p>하) <u>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국토교통부)</u></p> <p>거) <u>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국토교통부)</u> 및 <u>관련규정 등</u></p> <p>너) <u>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청)</u></p> <p>더) <u>철도사업법·동시행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u></p> <p>머) <u>승강기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u></p> <p>버) <u>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법시행령·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u></p> <p>서) <u>소방시설공사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u></p> <p>저) <u>지하수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u>, <u>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u></p> <p>터) <u>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u></p> <p>② 관련시방서 및 기준</p> <p>가) 공통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건설규칙 (국토교통부)</li> <li>-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국토교통부)</li> </ul>	<p>최근 규정류 및 기관명 반영</p>
<p>가) 공통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건설규칙 (국토해양부)</li> <li>-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국토해양부)</li> </ul>	<p>가) 공통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건설규칙 (국토교통부)</li> <li>-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국토교통부)</li> </ul>	

현행	변경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국토해양부)</li> <li>-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해양부)</li> <li>-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li> <li>- 한국산업규격, 기타공사의 안전, 교통,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 (지식경제부)</li> <li>-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국토해양부)</li> <li>-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국토해양부)</li> <li>- 철도시설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li> <li>- 에너지관리기준 (지식경제부)</li> <li>- 철도건설자산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지침 (국토해양부)</li> <li>-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li> <li>-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해양부)</li> <li>- 선로·건조물 제도 및 정비지침(국토해양부)</li> <li>- 도시철도건설규칙 및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요령 (국토해양부)</li> <li>- 선로점검지침(국토해양부)</li> <li>- 기타 정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국토해양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국토교통부)</li> <li>-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li> <li>-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li> <li>- 한국산업규격, 기타공사의 안전, 교통,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 (산업통상자원부)</li> <li>-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국토교통부)</li> <li>-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국토교통부)</li> <li>- 철도시설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li> <li>- 에너지관리기준 (산업통상자원부)</li> <li>- 철도건설자산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지침 (국토교통부)</li> <li>-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li> <li>-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li> <li>- 선로·건조물 제도 및 정비지침 (국토교통부)</li> <li>- 도시철도건설규칙 및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요령 (국토교통부)</li> <li>- 선로점검지침 (국토교통부)</li> <li>- 기타 정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국토교통부)</li> </ul>	
<p>나) 노반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공사 전문시방서(토목편) (국토해양부)</li> <li>-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노반편) (국토해양부)</li> <li>-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해양부)</li> <li>-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제기준 (국토해양부)</li> <li>-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국토해양부)</li> <li>- 터널설계기준 (국토해양부)</li> <li>- 터널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li> </ul>	<p>나) 노반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공사 전문시방서(토목편) (국토교통부)</li> <li>-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노반편) (국토교통부)</li> <li>-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교통부)</li> <li>-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제기준 (국토교통부)</li> <li>-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국토교통부)</li> <li>- 터널설계기준 (국토교통부)</li> <li>- 터널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li> </ul>	

현 행	변 경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설계기준 (국토해양부)</li> <li>-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li> </ul> <p>다) 궤도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로측량지침 (국토해양부)</li> </ul> <p>라) 건축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해양부)</li> <li>-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li> <li>- 건축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li> <li>-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li> <li>-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li> <li>- 신생에너지설비 지원기준 및 지침(지식경제부)</li> <li>- 화재안전기준(NFSC), 성능시험기술 기준,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li> </ul> <p>마) 전력 및 신호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철전력 시설지침 (국토해양부)</li> <li>-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li> <li>- 전철전력설비 및 정보통신설비 공사 설계 표준 (국토해양부)</li> <li>-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지식경제부)</li> <li>-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지식경제부)</li> <li>- 신호제어설비유지보수지침 (국토해양부)</li> </ul> <p>사) 운전 및 역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해양부)</li> <li>- 운전보안장치 및 운전장표 취급지침 (한국철도공사)</li> <li>- 운전취급지침(한국철도공사)</li> <li>- 광역전철 여객영업세칙(한국철도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설계기준 (국토교통부)</li> <li>-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li> </ul> <p>다) 궤도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로측량지침 (국토교통부)</li> </ul> <p>라) 건축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li> <li>-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li> <li>- 건축구조설계기준 (국토교통부)</li> <li>-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li> <li>-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li> <li>- 신생에너지설비 지원기준 및 지침(산업통상자원부)</li> <li>- 화재안전기준(NFSC), 성능시험기술 기준,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청)</li> </ul> <p>마) 전력 및 신호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철전력 시설지침 (국토교통부)</li> <li>-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li> <li>- 전철전력설비 및 정보통신설비 공사 설계 표준 (국토교통부)</li> <li>-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산업통상자원부)</li> <li>-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산업통상자원부)</li> <li>- 신호제어설비유지보수지침 (국토교통부)</li> </ul> <p>사) 운전 및 역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교통부)</li> <li>- 운전보안장치취급내규(한국철도공사)</li> <li>- 운전취급내규(한국철도공사)</li> <li>- 광역철도 여객업무편람(한국철도공사)</li> </ul>	

현행	변경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전철 여객운송약관(한국철도공사)</li> <li>- 광역전철 영업장표관리지침(한국철도공사)</li> <li>- 철도광고영업지침(한국철도공사)</li> <li>- 철도구내영업운영지침(한국철도공사)</li> <li>- 철도구내영업지침(한국철도공사)</li> <li>- 코레일서비스지침(한국철도공사)</li> <li>- 화물수송지침(한국철도공사)</li> <li>- 화물전산 및 장표지침(한국철도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한국철도공사)</li> <li>- 삭제</li> <li>- 철도광고영업규정(한국철도공사)</li> <li>- 삭제</li> <li>- 철도구내영업규정(한국철도공사)</li> <li>- 고객접점 서비스 규정(한국철도공사)</li> <li>- 화물수송내규(한국철도공사)</li> <li>- 삭제</li> </ul>	
3.3 노반분야	3.3 노반분야	
<p>3.3.2 세부지침</p> <p>(2) 지반조사 및 시험</p> <p>① 일반사항</p> <p>가) 지반조사는 철도설계기준(국토해양부)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고 제시기준이 상이할 경우 설계·시공부문 성과요구수준서가 우선한다.</p> <p>(3) 토공설계</p> <p>① 일반사항</p> <p>가) 본 설계·시공부문 성과요구수준서와 철도설계기준(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기준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토공구조물(길내기, 비탈면보호공, 본선부속 등)의 적정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p> <p>② 배수시설물 설계</p> <p>나) 수문조사 및 배수설계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홍수량 및 홍수위는 하천설계기준(국토해양부 제정)과 해당하천의 하천정비 기본 계획에 의한다.</li> </ul> <p>(5)터널설계</p> <p>② 내공단면 결정 시 고려사항</p> <p>다) 철도건설규칙(국토해양부)에 의거 구조물구간의 안전설비 및 터널안의 재난설비를 반영·설계하여야 한다.</p> <p>⑤지보재의 종류 및 특성</p>	<p>3.3.2 세부지침</p> <p>(2) 지반조사 및 시험</p> <p>① 일반사항</p> <p>가) 지반조사는 철도설계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고 제시기준이 상이할 경우 설계·시공부문 성과요구수준서가 우선한다.</p> <p>(3) 토공설계</p> <p>① 일반사항</p> <p>가) 본 설계·시공부문 성과요구수준서와 철도설계기준(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기준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토공구조물(길내기, 비탈면보호공, 본선부속 등)의 적정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p> <p>② 배수시설물 설계</p> <p>나) 수문조사 및 배수설계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홍수량 및 홍수위는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제정)과 해당하천의 하천정비 기본 계획에 의한다.</li> </ul> <p>(5)터널설계</p> <p>② 내공단면 결정 시 고려사항</p> <p>다) 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에 의거 구조물구간의 안전설비 및 터널안의 재난설비를 반영·설계하여야 한다.</p> <p>⑤지보재의 종류 및 특성</p>	<p>최근 규정류 반영</p>

현행	변경	사유
<p>아) 터널 부대설비 설계</p> <p>- 공사용 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터널공사시 굴착등에 따른 갱내에서 누출되는 지하수 및 장비 사용시에 발생된 오·탁수를 정화처리 후 방류토록 하여 주변 환경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 주변 환경 오염을 방지토록 하며, 오탁수 처리수의 수질은 주변환경의 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수 수질 허용기준 및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li> </ul> <p>⑥ 쉴드 TBM 터널 설계</p> <p>다) 세그먼트의 설계</p> <p>- 세그먼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을 표준으로 하며,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에 관해서는 국토해양부 제정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p>	<p>아) 터널 부대설비 설계</p> <p>- 공사용 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터널공사시 굴착등에 따른 갱내에서 누출되는 지하수 및 장비 사용시에 발생된 오·탁수를 정화처리 후 방류토록 하여 주변 환경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 주변 환경 오염을 방지토록 하며, 오탁수 처리수의 수질은 주변환경의 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u>물환경보전 법률</u>”의 배출수 수질 허용기준 및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li> </ul> <p>⑥ 쉴드 TBM 터널 설계</p> <p>다) 세그먼트의 설계</p> <p>- 세그먼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을 표준으로 하며,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에 관해서는 <u>국토교통부</u> 제정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p>	
3.5 건물분야	3.5 건물분야	
<p>3.5.2 세부지침</p> <p>(2) 기계설비</p> <p>② 지하역사, 지상역사의 대합실 등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PM10, 라돈(Rn) 등)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p>	<p>3.5.2 세부지침</p> <p>(2) 기계설비</p> <p>② 지하역사, 지상역사의 대합실 등은 『<u>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u>』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PM10, 라돈(Rn) 등)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p>	
3.6 전철·전력 분야	3.6 전철·전력 분야	
<p>3.6.2 세부지침</p> <p>(3) 전력설비</p> <p>① 일반방향</p> <p>바)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에 의거 대체에너지 도입 관계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⑥ 터널설비</p>	<p>3.6.2 세부지침</p> <p>(3) 전력설비</p> <p>① 일반방향</p> <p>바) <u>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u>에 의거 대체에너지 도입 관계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⑥ 터널설비</p>	

현행	변경	사유
<p>터널내 안전성분석 및 방재설비 주요 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안전법 제25조</li> <li>-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li> <li>-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li> </ul> <p>⑧ 에너지 절약 설계</p> <p>가)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에너지 관련 법령, 고시, 공고사항 등 전기관련 에너지 절약 설계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li> <li>- 에너지 관리기준(지식경제부 고시)</li> <li>-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건축공사비 산정기준 및 방법(지식경제부 고시)</li> <li>-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운영규정 (지식경제부 고시)</li> <li>-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li> </ul> <p>⑨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건축공사비 산정기준 및 방법 (지식경제부 고시)</li> <li>-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 운영규정 (지식경제부 고시)</li> </ul>	<p>터널내 안전성분석 및 방재설비 주요 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안전법 제25조</li> <li>-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u>국토교통부령</u>)</li> <li>-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u>국토교통부 고시</u>)</li> </ul> <p>⑧ 에너지 절약 설계</p> <p>가)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에너지 관련 법령, 고시, 공고사항 등 전기관련 에너지 절약 설계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u>산업통상자원부 고시</u>)</li> <li>- 에너지 관리기준(<u>산업통상자원부 고시</u>)</li> <li>-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건축공사비 산정기준 및 방법(<u>산업통상자원부 고시</u>)</li> <li>-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운영규정 (<u>산업통상자원부 고시</u>)</li> <li>-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고시 (<u>산업통상자원부 고시</u>)</li> </ul> <p>⑨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건축공사비 산정기준 및 방법 (<u>산업통상자원부 고시</u>)</li> <li>-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 운영규정 (<u>산업통상자원부 고시</u>)</li> </ul>	
3.7 신호설비분야	3.7 신호설비분야	
<p>3.7.2 세부지침</p> <p>(7) 전선로장치</p> <p>③ 게이블류는 설비의 용도에 따라 선정하며, 터널 내에 설치되는 케이블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에 의거 제시하여야 하고, IEC 규격으로 적용하여야 한다.</p>	<p>3.7.2 세부지침</p> <p>(7) 전선로장치</p> <p>③ 게이블류는 설비의 용도에 따라 선정하며, 터널 내에 설치되는 케이블에 대해서는 <u>국토교통부</u>에서 고시한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에 의거 제시하여야 하고, IEC 규격으로 적용하여야 한다.</p>	

현 행	변 경	사유
<p>(9) 안전설비 열차의 속도향상과 안전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설비를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세부 적용기준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에 따른다.</p>	<p>(9) 안전설비 열차의 속도향상과 안전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설비를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세부 적용기준은 <u>국토교통부</u>에서 고시한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에 따른다.</p>	
<p>4. 시공</p>	<p>4. 시공</p>	
<p>4.1 일반사항 4.1.2 법규 (1) 본 사업의 시공은 계약문서, 관련 법·령·시행규칙 그리고 정부제정 각종 시행서 및 기준과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각종 지침에 의거 시행하며 해석한다. (2) 주요 관련법령 및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과 상이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규정이 우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관계법령 및 관련 규칙, 지침(국토해양부)</li> <li>- 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해양부)</li> <li>- 하천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해양부)</li> <li>-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국 토해양부)</li> <li>- 근로기준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해양부)</li> <li>-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노동부)</li> <li>- 환경정책기본법 및 기타 관련법·시행령·시행규칙 (노동부)</li> <li>-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환경부)</li> <li>-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국 토해양부)</li> <li>- 전기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지식경제부)</li> <li>-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지식경제부)</li> <li>-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해양부)</li> <li>-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지식</li> </ul>	<p>4.1 일반사항 4.1.2 법규 (1) 본 사업의 시공은 계약문서, 관련 법·령·시행규칙 그리고 정부제정 각종 시행서 및 기준과 <u>국토교통부</u>가 제정한 각종 지침에 의거 시행하며 해석한다. (2) 주요 관련법령 및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과 상이할 경우에는 <u>국토교통부</u>에서 제정한 규정이 우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관계법령 및 관련 규칙, 지침(<u>국토교통부</u>)</li> <li>- 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u>국토교통부</u>)</li> <li>- 하천법·시행령·시행규칙 (<u>국토교통부</u>)</li> <li>-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u>국토교통부</u>)</li> <li>- 근로기준법·시행령·시행규칙 (<u>고용노동부</u>)</li> <li>-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u>고용노동부</u>)</li> <li>- 환경정책기본법 및 기타 관련법·시행령·시행규칙 (<u>환경부</u>)</li> <li>- <u>물환경보전법</u>·시행령·시행규칙 (환경부)</li> <li>- <u>건설기술진흥법</u>·시행령·시행규칙 (<u>국토교통부</u>)</li> <li>- 전기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u>산업통상자원부</u>)</li> <li>-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u>과학기술정보통신부</u>)</li> <li>-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u>국토교통부</u>)</li> <li>-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u>산업</u></li> </ul>	<p>최근 규정류 및 기관명 반영</p>

현 행	변 경	사유
<p>경제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지식경제부)</li> <li>-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지식경제부)</li> <li>- 산업표준화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지식경제부)</li> <li>-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지식경제부)</li> <li>-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지식경제부)</li>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국토해양부)</li> <li>-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국토해양부)</li> <li>- 산림기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li> <li>- 농지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li> <li>- 측량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국토해양부)</li> </ul>	<p><u>통상자원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u>산업통상자원부</u>)</li> <li>-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시행령 · 시행규칙 (<u>산업통상자원부</u>)</li> <li>- 산업표준화법 · 시행령 · 시행규칙 (<u>산업통상자원부</u>)</li> <li>-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u>산업통상자원부</u>)</li> <li>-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u>산업통상자원부</u>)</li>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 시행령 · 시행규칙 (<u>국토교통부</u>)</li> <li>- <u>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u> · 시행령 · 시행규칙 (<u>국토교통부</u>)</li> <li>- 산림기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u>산림청</u>)</li> <li>- 농지법 · 시행령 · 시행규칙 (<u>농림축산식품부</u>)</li> <li>- 측량법 · 시행령 · 시행규칙 (<u>국토교통부</u>)</li> </ul>	
<p>4.1.4 공사감리</p> <p>공사감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 수행업무지침에 의거 관리 · 감독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의 지시 및 요구사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p>	<p>4.1.4 <u>공사감리</u></p> <p>공사감리자는 <u>건설기술진흥법</u>에 따른 감리 수행업무지침에 의거 관리 · 감독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의 지시 및 요구사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p>	
<p>4.2 공사관리</p> <p>4.2.2 품질관리</p> <p>(2) 품질관리시험의 빈도와 시험방법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KS 규격으로 시행한다.</p>	<p>4.2 공사관리</p> <p>4.2.2 품질관리</p> <p>(2) 품질관리시험의 빈도와 시험방법은 <u>국토교통부</u> 제정 표준시방서 및 KS 규격으로 시행한다.</p>	
<p>4.2.3 공정관리</p> <p>(9) 공사의 준공 및 확인</p> <p>② 공사의 준공 및 확인은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공사 및 용역 관리 규정(한국철도공단) 및 철도종합 시험운행(국토해양부) 시행지침에 준하여 시행한다.</p> <p>③ 다만, 본사업의 공사시행 중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국가의 방침</p>	<p>4.2.3 공정관리</p> <p>(9) 공사의 준공 및 확인</p> <p>② 공사의 준공 및 확인은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u>국토교통부</u>), 공사 및 용역 관리 규정(한국철도공단) 및 철도종합 시험운행(<u>국토교통부</u>) 시행지침에 준하여 시행한다.</p> <p>③ 다만, 본사업의 공사시행 중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국가의 방침</p>	



현 행	변 경	사유
<p>변경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 국토해양부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그 준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p>	<p>변경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 <u>국토교통부</u>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그 준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p>	
<p>4.2.5 안전관리 (3) 공사 착공전에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열차운행선상 또는 운행선에 근접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4.2.5 안전관리 (3) 공사 착공전에 <u>건설기술진흥법</u>,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열차운행선상 또는 운행선에 근접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II. 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 성과요구수준서</p>	<p>II. <u>유지관리 및 운영</u> 부분 성과요구수준서</p>	
<p>1. 일반사항</p>	<p>1. 일반사항</p>	
<p>1.1 목적 본 운영 및 유지관리부문 성과요구수준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련된 제분 요구수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1.1 목적 본 <u>유지관리 및 운영</u>부문 성과요구수준서는 <u>국토교통부</u>에서 시행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u>유지보수 및 운영</u>에 관련된 제분 요구수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1.2 운영 및 유지관리 절차</p> <p>(1) 사업시행자는 동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하여 운영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협약으로 확정한다.</p> <p>(2) 운영 및 유지관리의 평가방법은 정기적인 보고서와 사용자의 만족도 조사(설문조사 등), 점검 등을 통하여 평가 한다.</p> <p>(3)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으로 정한 운영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무관청은 서비스 이행실적을 확인 후 성과요구수준에 따라 정부지급금을</p>	<p>21.2 운영 및 유지관리 절차</p> <p>(1) 사업시행자는 동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하여 <u>유지관리 및 운영</u>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협약으로 확정한다.</p> <p>(2) <u>유지관리 및 운영</u>의 평가방법은 정기적인 보고서와 사용자의 만족도 조사(설문조사 등), 점검 등을 통하여 평가 한다.</p> <p>(3)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으로 정한 <u>유지관리 및 운영</u>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무관청은 서비스 이행실적을 확인 후 성과요구수준에 따라</p>	

현행	변경	사유																																																												
<p>지불한다.</p> <p>* (신설)</p>	<p>정부지급금을 지불한다.</p> <p>*(신설) 사업시행자는 정상적인 열차운영과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철도운영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1.3 업무분담 한계</p> <table border="1" data-bbox="145 595 710 1435"> <thead> <tr> <th>구분</th> <th>사업시행자</th> <th>주무관청</th> </tr> </thead> <tbody> <tr> <td>운영</td> <td>· 신설역[(가칭)김해공항역, 가락IC역 등]역무업무 및 운임징수 · 주무관청 업무를 제외한 관련업무 전체</td> <td>· 기존역(부전역, 사상역, 장유역)역무업무 및 운임징수 · 열차운영 · 차량구매 및 차량검수·정비 · 통합관제 · 운전승무 및 운전취급 · 운임정산</td> </tr> <tr> <td>노반</td> <td>· 관련업무 전체</td> <td></td> </tr> <tr> <td>건물(기계설비포함)</td> <td>· 관련업무 전체</td> <td></td> </tr> <tr> <td>궤도</td> <td>· 관련업무 전체</td> <td></td> </tr> <tr> <td>변전·전차선·전력</td> <td>· 관련업무 전체</td> <td></td> </tr> <tr> <td>신호</td> <td>· 관련업무 전체</td> <td></td> </tr> <tr> <td>통신</td> <td>· 관련업무 전체</td> <td></td> </tr> <tr> <td>지하터널기계설비</td> <td>· 관련업무 전체</td> <td></td> </tr> <tr> <td>부대(부속)시설</td> <td>· 관련업무 전체</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운영	· 신설역[(가칭)김해공항역, 가락IC역 등]역무업무 및 운임징수 · 주무관청 업무를 제외한 관련업무 전체	· 기존역(부전역, 사상역, 장유역)역무업무 및 운임징수 · 열차운영 · 차량구매 및 차량검수·정비 · 통합관제 · 운전승무 및 운전취급 · 운임정산	노반	· 관련업무 전체		건물(기계설비포함)	· 관련업무 전체		궤도	· 관련업무 전체		변전·전차선·전력	· 관련업무 전체		신호	· 관련업무 전체		통신	· 관련업무 전체		지하터널기계설비	· 관련업무 전체		부대(부속)시설	· 관련업무 전체		<p>1.3 업무분담 한계</p> <table border="1" data-bbox="738 595 1303 1386"> <thead> <tr> <th>구분</th> <th>사업시행자</th> <th>주무관청</th> </tr> </thead> <tbody> <tr> <td>운영</td> <td>· 주무관청 업무를 제외한 관련업무 전체</td> <td>· 기존역(부전역, 사상역, 장유역) 및 신설역[(가칭)김해공항, 가락IC역]역무업무 · 운임징수 및 정산 · 차량구매 및 차량검수·정비 · 통합관제 · 열차운영(운전승무 및 운전취급)</td> </tr> <tr> <td>노반</td> <td>· 관련업무 전체</td> <td></td> </tr> <tr> <td>건물(기계설비포함)</td> <td>· 관련업무 전체</td> <td></td> </tr> <tr> <td>궤도</td> <td>· 관련업무 전체</td> <td></td> </tr> <tr> <td>변전·전차선·전력</td> <td>· 관련업무 전체</td> <td></td> </tr> <tr> <td>신호</td> <td>· 관련업무 전체</td> <td></td> </tr> <tr> <td>통신</td> <td>· 관련업무 전체</td> <td></td> </tr> <tr> <td>지하터널기계설비</td> <td>· 관련업무 전체</td> <td></td> </tr> <tr> <td>부대(부속)시설</td> <td>· 관련업무 전체</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운영	· 주무관청 업무를 제외한 관련업무 전체	· 기존역(부전역, 사상역, 장유역) 및 신설역[(가칭)김해공항, 가락IC역]역무업무 · 운임징수 및 정산 · 차량구매 및 차량검수·정비 · 통합관제 · 열차운영(운전승무 및 운전취급)	노반	· 관련업무 전체		건물(기계설비포함)	· 관련업무 전체		궤도	· 관련업무 전체		변전·전차선·전력	· 관련업무 전체		신호	· 관련업무 전체		통신	· 관련업무 전체		지하터널기계설비	· 관련업무 전체		부대(부속)시설	· 관련업무 전체		
구분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운영	· 신설역[(가칭)김해공항역, 가락IC역 등]역무업무 및 운임징수 · 주무관청 업무를 제외한 관련업무 전체	· 기존역(부전역, 사상역, 장유역)역무업무 및 운임징수 · 열차운영 · 차량구매 및 차량검수·정비 · 통합관제 · 운전승무 및 운전취급 · 운임정산																																																												
노반	· 관련업무 전체																																																													
건물(기계설비포함)	· 관련업무 전체																																																													
궤도	· 관련업무 전체																																																													
변전·전차선·전력	· 관련업무 전체																																																													
신호	· 관련업무 전체																																																													
통신	· 관련업무 전체																																																													
지하터널기계설비	· 관련업무 전체																																																													
부대(부속)시설	· 관련업무 전체																																																													
구분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운영	· 주무관청 업무를 제외한 관련업무 전체	· 기존역(부전역, 사상역, 장유역) 및 신설역[(가칭)김해공항, 가락IC역]역무업무 · 운임징수 및 정산 · 차량구매 및 차량검수·정비 · 통합관제 · 열차운영(운전승무 및 운전취급)																																																												
노반	· 관련업무 전체																																																													
건물(기계설비포함)	· 관련업무 전체																																																													
궤도	· 관련업무 전체																																																													
변전·전차선·전력	· 관련업무 전체																																																													
신호	· 관련업무 전체																																																													
통신	· 관련업무 전체																																																													
지하터널기계설비	· 관련업무 전체																																																													
부대(부속)시설	· 관련업무 전체																																																													
<p>2. 운영</p> <p>사업시행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되는 설계도서를 토대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실시협약으로 확정한다.</p>	<p>2. 운영</p> <p>사업시행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되는 설계도서를 토대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실시협약으로 확정한다.</p>																																																													
<p>2.1 역무운영계획</p>	<p>2.1 운임체계</p>	<p>조항명 변경</p>																																																												
<p>2.1.1 운임체계</p> <p>운임체계 및 운임징수 시스템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을 따른다.</p>	<p>2.1.1 조항명만 삭제</p> <p>운임체계 및 운임징수 시스템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을 따른다.</p>																																																													

현 행	변 경	사유
2.1.2 정거장의 운영 및 서비스 제공 (1) ~ (3)	2.1.2 삭제 (1) ~ (3) 삭제	
2.2 안전 및 방재계획	2.2 안전 및 방재계획	
2.2.1 안전교육 (1) 사업시행자는 이용 승객이 안심하 게 이용할 수 있는 설비 및 운영계획 을 작성하고 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시 행 하여야 한다.	2.2.1 안전교육 (1) 사업시행자는 이용 승객이 안심하 게 이용할 수 있는 <u>설비 운영계획</u> 을 작성하고 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시행 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3. 유지관리	
3.3 건물분야(기계설비 포함) 3.3.1 건축설비 (2) 전기설비 관리 ⑦ 조명기구는 효율적이며, 에너지절 감이 효율적으로 유지, 기준 조도이상 유지관리가 되도록 한다. (국토해양부 전철전력 시설 지침을 따르며 별도 명 시되지 않은 곳은 KSA301에 따른다.)	3.3 건물분야(기계설비 포함) 3.3.1 건축설비 (2) 전기설비 관리 ⑦ 조명기구는 효율적이며, 에너지절 감이 효율적으로 유지, 기준 조도이상 유지관리가 되도록 한다. ( <u>국토교통부</u> 전철전력 시설 지침을 따르며 별도 명 시되지 않은 곳은 KSA301에 따른다.)	
3.7 교통약자 편의시설 분야 (1) 사업시행자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에 의거 정거장의 여객취급설비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야 한다. ③ 청각장애자를 위한 열차상황 안내 표지, 시각 경보기 등 설치 운영 ④ 시각장애자를 위한 점자블럭 및 열 차상황 안내방송 등을 설치 운영	3.7 교통약자 편의시설 분야 (1) 사업시행자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에 의거 정거장의 여객취급설비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야 한다. ③ 청각장애자를 위한 열차상황 안내표지, 시각 경보기 등 설치 및 <u>유지관리</u> ④ 시각장애자를 위한 점자블럭 및 열차 상황 안내방송 등을 설치 및 <u>유지관리</u>	
Ⅲ. 성과의 점검 및 평가부문 성과요구수준서	Ⅲ. 성과의 점검 및 평가부문 성과요구수준서	
1. 성과의 점검	1. 성과의 점검	
1.3 성과점검 항목	1.3 성과점검 항목	
(1) 유용성 : 노반 및 여객이용시설, 정거 장시설, 궤도, 전차선 및 전력설비, 신	(1) 유용성 : 노반 및 여객이용시설, 정거 장시설, 궤도, 전차선 및 전력설비, 신	과업제의

현 행	변 경	사유
원의 교육훈련 등 시설물 사용상의 유용성 점검	<u>시설물 사용상의 유용성 점검</u>	
1.4 성과점검 세부항목 및 기준	1.4 성과점검 세부항목 및 기준	
<p>(1) 유용성</p> <p>③ 정거장 유지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정거장 대합실, 역무실, 종사원숙소, 화장실 등 정거장내 시설물 손상상태를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p> <p>⑦ 종사원 교육훈련 가) ~ 나)</p> <p>⑧ 주무관청 시정요구사항</p>	<p>(1) 유용성</p> <p>③ 정거장 유지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u>정거장내 시설물</u> 등의 손상상태를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p> <p>⑦ 삭제 가) ~ 나) 삭제</p> <p>⑦ <u>주무관청</u> 시정요구사항</p>	
<p>(2) 편리성</p> <p>① 정거장이용의 편리성 가) 사업시행자는 정거장별 대합실, 역무실, 종사원숙소, 화장실 등의 청소위생 및 당초 이용편의시설의 설치개소 수와 정상가동 시설 수를 매일 점검하여 기록하고, 이를 집계하여 성과점검 시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매표대기시간 가) ~ 나)</p>	<p>(2) 편리성</p> <p>① 정거장이용의 편리성 가) 사업시행자는 <u>정거장내 시설물</u> 등의 <u>청소위생</u> 및 당초 이용편의시설의 설치개소 수와 정상가동 시설 수를 매일 점검하여 기록하고, 이를 집계하여 성과점검 시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삭제 가) ~ 나) 삭제</p>	
<p>(3) 안전성</p> <p>⑤ 위기대처법 인지도 가) 사업시행자는 불의의 사고발생시를 대비하여 역무원 및 모든 종사자에게 위기대처법을 인지시켜야 한다.</p>	<p>(3) 안전성</p> <p>⑤ 위기대처법 인지도 가) 사업시행자는 불의의 사고발생시를 대비하여 <u>종사자에게</u> 위기대처법을 인지시켜야 한다.</p>	
<p>(4) 고객만족도</p> <p>③ 고객만족도는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p>	<p>(4) 고객만족도</p> <p>③ 고객만족도는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p>	

현행			변경			사유
항목	고객만족도 조사		항목	고객만족도 조사		
정거장 운용 부분	기본적 서비스평가	쾌적성(정거장및 편의시설 청결성, 정거장이용시 편안함, 질서확립), 정확성(역내 열차운행 정보전달), 안전성(역내 안전시설), 편리성(편의시설, 구입/예매/취소, 안내판 편리성)	정거장 운용 부분	기본적 서비스평가	쾌적성(정거장및 편의시설청결성, 정거장이용시 편안함, 질서확립), 정확성(역내 열차운행 정보전달), 안전성(역내 안전시설), 편리성(편의시설, 안내판 편리성)	
	부가적 서비스평가	시스템(타 교통연계), 정보(정보접근용이성, 역내안내방송), 부가서비스(TV, LED전광판, 노선도)		고객요구항목 조치사항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의 적절성	
	인적 서비스평가	전문성(운행관련 지식, 열차/시설물 관련 지식), 친절성, 대응성(대응의 신속성, 적극성)				
	고객 인지가치	가격대비 품질 적정성, 품질대비 가격 적정성				
고객 충성 도	운송사업체 인식	고객중심의 경영, 기업의 전반적 이미지, 제공서비스 본인과의 적절성				
	고객충성도	재이용 의향, 타인추천 의향				
고객요구항목 조치사항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의 적절성				
2. 성과의 평가			2. 성과의 평가			
2.3 세부 평가방법			2.3 세부 평가방법			
(1) 유용성			(1) 유용성			
⑦ 역무원 교육훈련 가) ~ 라) ⑧ 주무관청 시정요구사항			⑦ 삭제 가) ~ 라) 삭제 ⑦ 주무관청 시정요구사항			
(2) 편리성			(2) 편리성			
② 매표대기시간 가) ~ 마) ③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가용성			② 삭제 가) ~ 마) 삭제 ②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가용성			
3. 정부지급금의 지불			3. 정부지급금의 지불			
3.1 평가결과의 가중치 적용			3.1 평가결과의 가중치 적용			
(2) 평가결과 가중치			(2) 평가결과 가중치			
	구	분	가중치	구	분	가중치
1. 유용성 (40)	1. 유용성 (40)	1) 노반 유지관리	3	1. 유용성 (44)	1) 노반 유지관리	3
		2) 여객이용시설 유지관리	7		2) 여객이용시설 유지관리	8
		3) 정거장 유지관리	7		3) 정거장 유지관리	8
		4) 궤도 유지관리	5		4) 궤도 유지관리	6
		5) 전차선, 전력 유지관리	4		5) 전차선, 전력 유지관리	5
		6) 신호, 통신 유지관리	4		6) 신호, 통신 유지관리	5
		7) 역무원 교육훈련	2		7) 주무관청 시정요구사항	9
		8) 주무관청 시정요구사항	8			
2. 편리성 (10)	2. 편리성 (10)	1) 정거장이용의 편리성	3	2. 편리성 (6)	1) 정거장이용의 편리성	3
		2) 매표대기시간	4		2)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가용성	3
		3)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가용성	3			
3. 안전성 (25)	3. 안전성 (25)	1) 정거장 안전시설 가용율	5	3. 안전성 (30)	1) 정거장 안전시설 가용율	6
		2) 열차운행 장애율	5		2) 열차운행 장애율	6

현행			변경			사유
		3) 사고처리 5			3) 사고처리 6	
		4) 보안시설 5			4) 보안시설 6	
		5) 위기대처법 인지도 5			5) 위기대처법 인지도 6	
4. 고객 만족도 (25)	4.1 정거장운용 부문(12)	1) 기본적 서비스 평가 5	4. 고객 만족도 (20)	4.1 정거장운용 부문(14)	1) 기본적 서비스 평가 14	
		2) 부가적 서비스 평가 3				
		3) 인적 서비스 평가 4				
	4.2 고객 충성도(7)	1) 운송사업체 인식 3	4.3 고객요구항목 조치사항(6)	2) 고객충성도 4	4.3 고객요구항목 조치사항(6) 6	
		2) 고객충성도 4		계 100		
부록3 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 요령			부록3 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 요령			
제2조 (평가항목 및 가중치 적용)			제2조 (평가항목 및 가중치 적용)			
② 제1항의 평가결과는 유용성, 편리성, 안전성, 고객만족도의 가중치를 0.4, 0.1, 0.25, 0.25로 부여하여 서비스 대가 지불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는 유용성, 편리성, 안전성, 고객만족도의 가중치를 0.44, 0.06, 0.30, 0.20로 부여하여 서비스 대가 지불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